<mark>「학칙 개정」 신·구 조문 대조표</mark>

혂 행

제11조(출결처리)

-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하다.
 - 1. 천재지변, 전염병 등
 - 2.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
 - 3.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 하지 못하는 경우
 - (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: <u>연간 10일 이내</u>, 교환(위탁)학습 : 연간 1개월 이내)
 - 4. 가족 및 친·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(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)
 - 5.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30조(교외체험학습)

- ④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개별위탁체험학습 기간은 학교교육과정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월(4주)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고, 집단교류체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기간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⑤ 개별위탁체험학습은 대안학교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며, 집단교류 체험학습은 야외 활동이 활발한 계절에 사회, 학교 행사를 고려하여 시기를 정하며, 주관하는 학교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활동을 전개 하고, 효도·방문체험학습은 연중실시한다.

개정안

제11조(출결처리)

-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하다.
 - 1. 천재지변, 전염병 등
- 2.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(수정)3.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 하지 못하는 경우
 - (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<u>(가정학습 포함)</u> : <u>연간</u> <u>30일 이내</u>, 개인 교환학습 : 연간 1개월 이내, 단체 교환학습 : 2주 이내)
 - 4. 가족 및 친·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(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)
 - 5.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(수정)④ 교외체험학습은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견학, 답사,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,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,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, 경계'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'가정학습'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수 있다.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원칙이나, 필요시 반일(4시간)도 사용할수 있다. (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)

(삭제)⑤

- (신설)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·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실시 3일 전(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, 경계' 단계의경우 전일)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, 체험학습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. (단,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지역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.)
 - ⑤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,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.
 - ① 교환학습(개인, 단체)은 학부모의 교환학습신청→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→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→교환학습 실시→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→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.
 - 8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.